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전문
의수련
및
자격
인정
등에
관한
규정
시행
규칙
일부
개정
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
심사
전

1. 개정이유

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며, 전문과목의 명칭 중 ‘흉부외과’의 경우 환자가 진료영역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서식 및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서식에 규정된 흉부외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개정(안 제15조, 안 제17조 및 별지 제6호)
- 나. ‘흉부외과’를 ‘심장혈관흉부외과’로 개정(안 별지 제1호 및 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 :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(시험실시 결과보고) 중 “1. 성명, 주민등록번호”를 “1. 성명, 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15조(시험실시 결과보고) 중 “4.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(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) 1장”을 “4.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 1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(전문의 자격 인정대상) 중 “1.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”를 “1. 성명, 성별, 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중 응시자 기본 인적사항의 “사진 3.5cm × 4.5cm”와 하단 부분 및 “성명(한자)”을 삭제하고, “자택전화”, “주민등록번호”란을 각각 “이메일 주소”와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중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의 “연한”을 “기한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통합수련 신청사항의 전공의 신청 인원(명)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수련병원(수련기관) 명세의 전문과목별 수련 이수예정 인원(명)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②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제2호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가목2)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제1호 구분란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(보건의료기관개설자, 보건의료인)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(보건의료인)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⑦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제43-3쪽 1-4. 병실 및 병상 현황(전문과목별)의 전문과목란 및 같은 서식 제43-6쪽 1-7. 진료과, 진료부서 및 그 밖의 시설란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제43-7쪽 1-8.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실적의 전문과목란 및 같은 서식 제43-9쪽 1-10. 의사 배치 현황의 전문과목란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제43-25쪽 2-7. 중 “흉부외과”를 각각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⑧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장혈관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시험 실시 결과보고) 자격 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 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성명, <u>주민등록번호</u> ... 2. ~ 4. (생 략)	제15조(시험 실시 결과보고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성명, <u>성별</u> , <u>생년월일</u> ... 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전문의 자격 인정대상)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성명, 성별, <u>주민등록번호</u> ... 2. ~ 4. (생 략)	제17조(전문의 자격 인정대상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성명, 성별, <u>생년월일</u> ... 2. ~ 4. (현행과 같음)